

99 包裝技術開發事業 要領·計劃 公告
產資部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을 專擔機關으로
98年度 包裝技術開發 前例없는 成果 好評

산업자원부는 99. 5. 10 일부, 산업자원부 고시 제 99-49호로 『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및 99. 5. 14일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 99-109호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고시하여, 98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 걸쳐, 韓國包裝開發研究院(院長李大侓)을 등 포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서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 98년 작년도에 국고지원 8억 5천 600만원의 개발비로 지류포장, 플라스틱포장, 금속포장, 유리포장등에 대한 포장기술개발 진단지원 224개 업체를 완료하고, 역시 포장전분야 90개 포장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이제까지 포장기술 개발을 해온 가운데, 가장 우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99년도에도 국고지원 8억 원으로 수출 및 환경 기여 고기능, 고기술 포장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98년도의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포장기술 개발 사업부문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8年度 韓國包裝開發研究院
 包裝技術診斷·開發·展示 實績**

생산분야가 67업체 (29%), 포장표준화에 의한 원가절감 분야가 102업체(46%), 포장공정자동화 및 기계화 분야가 55업체(25%)로 분포되었음

I. KPD 98 포장기술진단 실적

1. 포장재 분야별 진단지원 실적을 분석하면 포장소재 및

〈포장재등 분야별 분류〉

구 분	포장소재 및 생산				소	포장표준화		소	포장공정	포장	소	합
	지류	플라스틱	유리	금속기타	계	신포장	원가절감	계	자동화	기계	계	계
업 체 수	21	25	14	7	67	28	74	102	42	13	55	224
백분율(%)	9	11	6	3	29	13	33	46	19	6	25	100

2. 포장기술진단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지역이 전체 국에 고루 지원이 이루어 졌음의 136개 사로 60%, 그리고 충청, 영남, 호남순으로 전

〈지역별 분포〉

내용	구분	서울/경기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계
업체수		136	6	36	18	27	1	224
백분율(%)		60	3	16	8	12	1	100

II. KPD 98 포장기술 개발 실적

1. 포장 기술개발 기본원칙

신포장기술개발지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제 선정 후, 개발기간 최고 60일 기준, 지도위원 및 참여 연구원 3

인이상 원칙

2. 포장재등 분야별 개발지원 실적을 분석하면 포장소재 및 생산분야가 32업체(40%), 포장표준화에 의한 원가절감 분야가 33업체(41%), 포장공정 자동화 및 기계화 분야가 15업체(19%)로 분포되었음

〈 포장재등 분야별 분류〉

구 분	포장소재 및 생산				소 계	포장표준화		소 계	포장공정 자동화	포장 기계	소 계	합 계
	지 류	플라스틱	유리	금속기타		신포장	원가절감					
업 체 수	11	14	6	1	32	15	18	33	9	6	15	80
백분율(%)	14	17	8	1	40	19	22	41	11	8	19	100

3. 포장재등 개발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서울, 경기)지역이 49개 업체(61%), 영남지역이 12개 업체(15%)로 전

〈 지역별 분류〉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계
업체수	49	3	12	6	9	1	80
백분율(%)	61	4	15	8	11	1	100

III. KPD 98 개발포장기술 전시 실적

1. 전시행사 주체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한국포장개발연구원(KPD)

2. 후 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비철금속협동조합연합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한국포장기계협회, (사)한국포장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3. 참가대상

'98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과제 중 상품화 실현이 가능한 품목 36개 분야

〈 전시품목 현황〉

전시품대상 분야	업 체
신포장재료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17업체
포장표준화(재료, 치수, 강도, 기법)개선으로 원가절감	12업체
포장라인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의한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	7업체

4. 전시장소 : 코엑스(COEX) 본관 1층 태평양관

5. 전시효과

- 관람인원 : 포장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포장관련전문대학생 등 5,000명 (1일 평균 : 1,500명)
- 상담건수 : 980건 (개발문의 360건, 지도위원 문의 630건)
- 포장기술실태설문조사 실시 : 설문작성 내방자(175명)
- 전시현장에서의 효과
 - ▷ 안내카드 배포 : 4,000매 제작배포
 - ▷ 기념품 제작 증정
 - ▷ 홍보용 책자 배포 ('98 포장기술개발지원 사업안내 책자 등)

1999年度 包裝技術開發事業 早期 本格化 韓國包裝開發研究院 事業說明會 後 接受 開始

韓國包裝開發研究院에서는 지난 99. 5. 19일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하고, 전년도 보다 조기 본격사업에 들어갔다.

동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99년도 포장기술개발 사업 운영요령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국고지원 기술개발비 : 8억원
2. 개발과제당 국고지원 75%, 최고 1,000만원, 개발과제로 선정 되면 50% 선급, 50% 성공 평가시 지급
3. 포장기술 분야별 개발 비율 기준

NO	분 아	비 율
1	지류포장	30% 이 내
2	합성수지 포장	20% 이 내
3	유리·도기 포장	15% 이 내
4	금속포장	15% 이 내
5	포장표준화	10% 이 내
6	포장기계 및 라인자동화	10% 이 내

4. 개발위원별 연구과제 참여 한도 (98년에는 지도위원이라 칭하였슴)
 - 책임개발위원 : 원칙적으로 1인 1개 과제, 최대 2개 과제 이하
 - 개발참여연구원 : 3개 과제 이하
5. 개발참여 비율 : 총 100% 초과 못함
6. 개발과제 평가위원은 개발위원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없음
7. 개발과제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
8.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과제 신청안내
 - 기 조사된 개발과제 중 해당과제 신청가능(참여기업과 개발위원 공동신청)
 - 신규자유개발과제 신청가능 (9월 15일까지 접수)
9. 기 조사된 포장기술개발 과제 (지정과제)자료

이 지정과제 자료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각 포장단체, 각 포장기업체, 포장기계 및 포장개발위원으로부터 사전기술수요 조사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받은 과제이며, 이 외에 자유제안 과제도 접수합니다.

(아래 과제 신청의 경우 신청 전에 전화 협의 요망)

- ① 지류포장 개발분야 (36)
 - 1) 선도유지용 기능성 항균성포장지의 개발
 - 2) 문서 보존용 골판지 포장 개발

- 3) 환경친화성 BIB(Bag In Box) 포장개발
- 4) 지류 폐기물을 이용한 파렛트 제작기술 개발
- 5) 저온창고용 통기성 골판지상자의설계
- 6) 포장용 한지의 강도개선 연구
- 7) 농산물 EPS tray 대체용 신기능성 Pulp mold 개발
- 8) 수출용 오이의 선도연장을 위한 기능성 포장개발
- 9) 저급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지류완충포장재 개발
- 10) 콜드체인용 대용량 (10리터) 아이스크림 내수코팅 지관용기 개발
- 11) 지관전용 EOE(EASY OPEN END) 국산화 개발
- 12) 고 압축강도 골판지상자 개발
- 13) 수출용 저가 PC 포장개발
- 14) 꽃의 선도유지 포장 개발
- 15) 냉장고용 종이제 Pallet의 개발
- 16) 결로 방지 골판지 개발
- 17) 냉동생선수송용 BOX의 개발
- 18) 재활용이 용이한 김밥도시락용기의 개발
- 19) 화성용 지관원지에 대한 강도 최적화 방안 개발
- 20) 골판지포장인쇄 정도향상 설비 SFC챔버시스템 개발
- 21) 세척 알타리무우 내부·외부 포장재 및 포장기법 개발
- 22) 적재 Open형 딸기 포장용 골판지포장재 개발
- 23) 판매 소구력있는 Window 골판지포장재 개발
- 24) 골판지포장 강도증가 및 내수성 부여 처리제 및 호료 개발
- 25) 골판지포장 생산공정 골판지-골판지상자 In Line화 개발
- 26) 내후도 향상 골판지잉크 개발
- 27) 골심지 회분 및 이물질 감량 기술 개발
- 28) 고속 Corrugator에 적절한 접착제 조제기술 개발
- 29) 골판지원지 창고 자동송출 System 개발
- 30) 송이버섯 향기 보존 기능성 포장재 개발
- 31) 절화 선도 유지 위한 적립수식 포장재 개발
- 32) 수출용 자동차 보관 포장재 조형 설계 및 골판지 포장 개발
- 33) 강도 및 기능성 높은 골판지 Palltet 개발
- 34) 안전 고정성 수박 포장 조형설계 및 골판지 포장재 개발
- 35) 참외 소비자 분배 포장 및 Gift 참외 포장 조형설계

및 골판지 포장재 개발

36) 과일 - 채소류의 선도유지를 위한 Etylene Control Sachet (EC Sachet) 개발

② 합성수지 포장개발 분야 (13)

- 1) 세제(비누)용 내면 골판지 제거를 위한 포장재 개발
- 2) 플라스틱제 벌크 컨테이너 개발
- 3) 고온살균을 위한 내열 LLDPE FILM 개발
- 4) 고온살균이 가능한 무형제형 접착방식의 진공포장재 개발
- 5) 기능성 포재 흡수 Sheet 개발
- 6) 즉석 식품 용기 포장개선
- 7) 포장 김치 숙성 감지용 포장재 개발
- 8) 개발 PVC 라벨 필름 대체 stretch-sleeve 폴리에틸렌 라벨 필름 개발
- 9) 메틸로센(metallocene) 촉매를 이용한 폴리에틸렌계 식품 포장용 필름 개발
- 10) 고온 충전용 양금 포장 개발
- 11) 포장 Film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크류 설계
- 12) 환경친화적(Recycle/Repulping) 방습포장소재의 개발
- 13) 분무형 표면 보소 피막제 제조

③ 유리·도기 포장 개발 분야(9)

- 1) 가정용 가습기의 Smoke색 내열성 유리포장용기 개발
- 2) 폐자원을 활용한 유리포장용기 개발
- 3) 유리포장 자동화 기술개발
- 4) 경량 강화 유리포장 용기 개발
- 5) 유리포장제조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6) 유리포장용기 칼라 코팅 기술개발
- 7) 유리포장 자동화 기계 개발
- 8) 폐유리병 분말을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제품개발
- 9) 폐유리병을 이용한 GLASS Concrete 개발

④ 포장표준화 개발분야(8)

- 1) 치과도재분말의 포장개발
- 2) 합성고무 수출포장용 철상자 개발
- 3) 냉면육수의 포장기법 및 포장 개발

- 4) 제빵용 대탈타이 대체 개발
- 5) 문어 소비자표장 설계 연구
- 6) 전통주류 포장라인 및 포장개선
- 7) 잡곡류 소비자포장기술개발
- 8) 딸기 수송 및 판매용 포장재 개발

⑤ 포장기계 및 라인자동화 개발분야(14)

- 1) Plastic Film Blown M/C Auto-Doffing System
- 2) Multi-Step Scaling & Packing System
- 3) 범용(반)자동 캠핑기 개발 및 제작
- 4) 진공성형 컵의 Labeling, Poly Bagging, Counting, Case Packing Line 개발
- 5) Carton Sealer용 Tape Dispenser(100mm Overwrap) 개발
- 6) 국산 유압식 진동 시험기 (Hydraulic Vibration Tester) 소프트웨어 개발
- 7) 시간분재 조절기
- 8) 끝단처리기
- 9) 전기스위치 박스의 포장 및 코팅 자동화 시스템 개발
- 10) Playing Card의 포장자동화 시스템 개발
- 11) 주사제 포장자동화 시스템
- 12) Can End Inspecting & Counting System 개발
- 13) Panel 적재 및 포장 시스템 개발
- 14) 자동차용 볼트 포장공정 및 물류 합리화

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專擔機關은 韓國包裝開發研究院 再指定

이 요령은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포장개발 지원사업

2.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한 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포장기술발전심의회)

- ① 포장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포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심의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둔다.

제4조(전담기관)

-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3. 개발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
 4. 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촉진
 5.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포장기술 전문가로 포장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전담기관내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개발위원)

- ①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개발위원"이라 한다)는 포장 및 포장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개발수행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개발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비의 관리
 3. 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참여기업)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2.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4. 관계법령의 준수

제8조(개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당해 연도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사전수요조사의 실시)

-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평가위

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사업의 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개발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
 - 3.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가능성
 - 4. 개발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 5. 기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개발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의 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발사업자 선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 신청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사업비 계상)

- ① 개발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신청시 개발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인건비는 포장기술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개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참여인원수 및 참여율을 계상하되, 동일개발자가 다수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공기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또는 자료 및 시장조사비), 제 잡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의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의 지원정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개발과제의 유형과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의 3/4까지 지원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 ①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규정이 정한 서식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과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발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개발사업 지원대상자가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포장산업 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지급)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위원에게 과제별로 개발사업비를 지급하되 과제별 세부 지급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개발위원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발위원은 개발비 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약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은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개발사업비는 개발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

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인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평가 및 활용)

- ① 개발사업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최종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위원 및 참여기업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별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의 목록, 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

- ① 개발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기 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개발위원에 대하여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개발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위원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개발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개발사업 수행중 발생된 특허권, 유형적 발생품, 시제품, 보고서 판권 등과 기자재, 연구시설 등의 정부출연금 지분은 제17조에 의한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개발위원 소유로 하되, 개발사업 종료후에는 참여기업 소유로 한다.

제20조(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기획,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심의회)

심의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 전담기관 및 개발위원, 참여기업의 개발자 등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예외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자가 개발사업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업발전법령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에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1999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09호, 99.5.14〉

1. 사업목적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포장개발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증진 및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개발을 지원
- 포장기술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포장기술개발을 지원
- 포장기술 개발결과 실용화가 가능한 포장제품에 대하여 산업기반기금(포장분야 고부가가치화사업)과의 연계 추진

2. 지원범위

가. 지원분야
포장재 및 포장기계 생산, 사용업체를 상호연계한 국내 및 수출포장의 신기술개발, 물류합리화 및 라인자동화, 상

품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한 공산품, 농축수산물, 전통식품등의 포장개발 분야로서

-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포장기술
- 포장의 고기능, 신기술, 환경친화성이 있는 포장기술
- 유형개발 효과가 큰 포장기술
- 포장표준화 및 포장공정자동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포장기술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어촌단체로서 포장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큰 업체나 단체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제외한 대기업(협약체결일자 기준)

다. 우선지원대상

- 포장개선을 통해 매출증가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상품의 제조기업
-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추천한 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3.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800백만원

나. 지원기간 :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 업체당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지원한도 : 총 개발비용의 75%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3개월이내

4. 지원방법 및 절차

- 전담기관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개발위원”으로 등록된 포장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을 지원
-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
-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업체 선정과 지원규모 및 개발위원의 연계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개발타당성을 검토한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개발위원 선정·연계 기준

- 지원대상업체가 원하는 자로서 개발위원 자격을 갖춘 자
 - 기술개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지원대상업체 및 개발위원간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및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

5. 개발지원금의 지급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업체 및 개발위원간 협약체결후 개발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결과 평가후 별도절차에 따라 지급
- 정부예산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업체의 포장기술 개발 분담금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함.

6. 제재조치

지원대상업체 또는 개발위원이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접수기간 및 접수(문의)처

가. 접수기간 : 1999년 9월 15일

나. 접수처 : 한국포장개발연구원 포장개발연구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미주빌딩 7층 (우150-010)
- 전 화 : 02·3775-0567(대)
- FAX : 02·761-3771
- 인터넷 : <http://www.kpd.re.kr>

※ 접수는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도 가능